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 양민규 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
례안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2월 5일 「교권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
로 그동안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
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

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기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불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폐지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